

46. 콩고민주공화국 (Congo, Democratic Republic of the)

◎ 주요 변동사항

구 분	2017	2019	비 고
가입대상	자영자 적용제외	자영자 임의적용	가입대상 확대
보험료율	7%(근로자/사용자 분담)	10%(근로자/사용자 분담)	3% ↑
연금수급 개시 연령	60세~65세	60세~65세	-
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	60개월(최종 10년 중)	180개월	기간 요건 ↑
노령연금 지급률(40년 기준)	66.8%	90%	23.2% ↑
일시금	5년 납부시 받을 수 있던 연금액(年)의 10배 지급	최종월 적용소득 2배×가입기간(年)	지급액 상향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56년(벨기에령 콩고 및 르완다-우룬디에서의 근로자 연금)
- 현행법 : 1961년(사회보장)

2 제도형태

- 사회보험제도

3 적용대상

- 당연적용 : 근로자(가사근로자, 임시근로자, 선원, 특별제도에 가입되지 않는 공공부문 근로자, 외교공관 근로자, 기업 임원을 포함)
- 임의적용 가능
- 특별제도 : 특정 공무원

4 재원조달

- 가입자 : 월 소득의 5%. 임의가입자는 연평균 신고소득의 10%
- 자영자 : 임의가입자는 연평균 신고소득의 10%
- 사용자 : 월 임금총액의 5%

- 정부 : 필요에 따라 보조금 지급
 - 특별제도에 가입되지 않은 공공부문 근로자를 위한 사용자 부담금 납부

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- 노령연금
 - 가입기간 180개월 이상, 60세~65세 도달[조로(早老)인 경우 55세]
 - 가입자가 60세 이상이면, 최대 60개월까지 가입기간 구입 가능
 - 조기연금 : 가입기간 180개월 이상, 55세 도달
 - 고용은 중지되어야 함
 - 상호협정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의 국외지급 가능
- 노령청산금
 - 가입기간 180개월 이상, 60세~65세 도달
 - 고용은 중지되어야 함
- 장애연금
 - 60세 미만
 - 소득능력을 66% 이상 영구 상실한 것으로 판정받고 장애 발생 전 최종 5년 중 가입기간이 36개월 이상
 - 장애의 원인이 산재사고가 아닌 경우 최소 가입기간 요건 없음
 - 상시간호수당 : 가입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타인의 상시간호가 필요한 경우 지급
 - 장애연금은 65세 도달 시 상시간호수당을 포함한 동일한 금액의 노령연금으로 대체됨
 - 국가사회보장청에 의해 승인되거나 임명된 의사가 정기적으로 장애 재판정
- 유족연금
 - 사망자가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또는 180개월 이상의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 지급
 - 수급가능 유족
 - 사망자와 6개월 이상 혼인 관계였던 배우자(사망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기간 요건 없음)
 - 18세 미만 미혼 고아(학생인 경우 26세 미만)
 - 선순위 유족이 없는 경우, 피부양 부모나 조부모
 - 배우자연금은 재혼 시 지급 정지
 - 재혼청산금 : 배우자 재혼 시 지급
- 유족청산금
 - 사망자가 사망 당시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 180개월 미만인 경우
 - 수급가능 유족
 - 사망자와 6개월 이상 혼인 관계였던 배우자(사망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기간 요건 없음)

- 18세 미만 미혼 고아(학생인 경우 26세 미만)
- 선순위 유족이 없는 경우, 피부양 부모나 조부모

6 급여종류별 지급액

□ 노령급여

○ 노령연금

- 최종 60개월 동안의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40% + 180개월 초과 12개월 마다 2%씩 추가
- 조기연금 : 60세 이전 청구 1년마다 5%씩 감액
- 월 최저연금액은 법정 월 최저임금의 50%
 - 법정 일 최저임금 : 7,075 Congolese francs
- 월 최고연금액은 최종 60개월 동안의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60%
- 급여는 분기별 지급
- 연금액 조정 : 총리령에 의해 정기적으로 조정

○ 노령청산금

- 가입자 최종월 적용 소득의 2배를 가입기간 12개월마다 산정하여 지급
- 최저노령청산금은 월 최저연금액의 50%
 - 월 최저연금액은 법정 월 최저임금의 50%
 - 법정 일 최저임금 : 7,075 Congolese francs

□ 장애급여

○ 장애연금

- 최종 60개월 동안의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40% + 180개월 초과 12개월 마다 2%씩 추가
- 장애연금이 지급되는 첫째 달부터 60세까지 매월에 대하여 가입기간이 인정(credit)됨
- 상시간호수당 : 장애연금의 50%
- 급여는 분기별 지급
- 급여 조정 : 총리령에 의해 정기적으로 조정

□ 유족급여

○ 유족연금

- 유족배우자연금 :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 요건을 충족한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50% 지급
- 재혼청산금 : 배우자연금 12개월분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
- 고아연금 :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 요건을 충족한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50%를 수급자격 고아들이 균등 배분 ; 완전고아인 경우 100% 지급
- 피부양 부모/조부모 연금 : 수급자격이 있는 배우자나 고아가 없는 경우,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 요건을 충족한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100%를 피부양 부모/조부모가 균등 배분하여 수급
- 급여는 분기별 지급

- 급여 조정 : 총리령에 의해 정기적으로 조정
- 유족청산금
 -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한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 12개월분을 수급 자격이 있는 유족에게 균등배분 지급
 - 유족배우자에게 50%, 고아에게 50%(완전고아는 100%)
 - 유족배우자나 고아가 없는 경우, 피부양 부모/조부모에게 균등 지급

7

관리운영기관

- 노동고용사회보장부(Ministry of Labor, Employment and Social Security)
 - 행정적 · 기술적 감독
- 국가사회보장기금(National Social Security Fund)
 - 보험료 및 급여 관리
 - 10개의 중앙 이사회, 수도 킨샤사에 있는 8개의 도시 이사회, 26개의 지방 이사회, 18개의 지역 사무국, 15개의 지사

<2019년 ISSA 자료>